

# 해저자원(천연가스 및 심층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조 해 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과

## I.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1. 연구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만으로 주민복지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의 재원조달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현재 우

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적 취약성이 지방자치제도정착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시·구·군간 세목교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기존의 정해진 세원(세수)을 놓고 빼앗고 뺏는 사항인지라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세원(세수)을 놓고 자치

<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

(단위: %)

년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64.2	95.3	78.6	76.8	76.1	68.5	74.7	74.9	79.3	45.7	49.7	45.5	39.6	37.4	45	50.5	42.4
2001	62.9	95.7	75.6	68.1	75.4	66.2	75.6	72.7	81.2	37.9	45.4	43.9	38.8	38.4	43	50.3	42.9
2002	63.5	96.9	78.6	75	80.7	69.4	79.8	74.9	85	33.2	44.5	49	39.2	38.4	41.3	46.7	45.5
2003	70.2	92.7	80.3	71.6	83.7	73.5	77.9	77.4	85.3	57.1	57.7	56.1	51.4	49.1	51.5	56.9	54.6
2004	59	95.5	75.7	74.2	73.9	60.8	74.7	68.9	78.2	33	35.2	41.7	28.3	23.6	33.3	41.9	34.9
2005	57	95	70.6	71.6	68.3	59.1	74.4	67.5	76.4	31.5	34.5	41.7	23.8	23.7	31	42.1	35.1
2006	54.4	94.3	70.2	70.7	69.2	57.5	72.8	65.7	75.2	26.7	31.3	35.3	23.9	20.2	27.8	38.8	33.8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순계규모) × 100

지방자치단체 결산 순계규모

자료: 울주군 기획감사담당관실

단체간에 다툼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의 이양이 없으면서도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신세원의 발굴과 관련하여 많은 세목의 설치하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국민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은 기존 납세자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 조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익·이익을 신세원의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지방세의 세원으로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사용과 직접 연계되어 수익을 얻는 세원을 지방세

내로 적극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수용방안으로 지역개발세 활성화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지역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사회개발에 재투자하기 위한 세목이다.

현행 법령에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조치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제도적 환수조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차원에서 환수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개발·이용 하거나 지역적 여건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자원의 이용 및 개발보상의 의미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각종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해 및 자연환경훼손, 폐기물 처리, 도로의 파손 및 혼잡, 각종 규제 등은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수익자로부터 자원 이용대가 및

손실 보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 II. 지역개발세원 실태

### 1. 지역개발세의 현 실태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지역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의 균형개발을 꾀하고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 지역사회개발에 재투자하려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세목이다.

하지만 지역개발세는 지방세의 여러 세

목 중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그 비중은 전체세수의 0.3%에 불과하다.

천연가스 시추 및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익에 대하여 국가는 법인세 및 용수료를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제규정이 있어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의 역외유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하자원, 지하수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와 유사한 해저자원(천연가스 및 심층수)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 2005 지역개발세 자원별 과세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세액계	자원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전국	110,526,306	10,168,033	7,580,895	1,585,335	91,192,043
서울	623,958		623,958		
부산	91,731,601		539,558		91,192,043
대구	361,760		361,760		
인천	84,740		84,740		
광주	245,524		245,524		
대전	271,291		271,291		
울산	255,136		255,136		
경기	4,242,782	15,959,735	1,023,609	27,226	
강원	5,203,126	10,646,320	727,246	1,281,984	
충북	2,926,289	1,155,584	344,609	270,512	
충남	436,191		436,191		
전북	426,693	761,430	274,407		
전남	449,015	692,889	306,985	3,452	
경북	1,776,279	2,823,040	927,206	2,161	
경남	1,380,093	1,666,232	1,046,847		
제주	111,828		111,828		

자료: 2005 지방세정연감

< 지방세 세목별 세수구조 >

(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15,257	100	331,331	100	342,016	100
취득세	52,782	16.7	55,029	16.6	53,660	15.7
등록세	75,045	23.8	75,500	22.8	67,158	19.6
재산세	8,175	2.6	9,034	2.7	10,178	3.0
종토세	14,057	4.5	16,026	4.8	20,316	5.9
도시세	8,938	2.8	9,985	3.0	11,853	3.5
공동시설세	3,749	1.2	4,109	1.2	4,648	1.4
담배소비세	22,378	7.1	23,844	7.2	27,223	8.0
주행세	10,634	3.4	12,658	3.8	17,503	5.1
레저세	10,777	3.4	8,959	2.7	7,719	2.3
도축세	485	0.2	440	0.1	445	0.1
자동차세	17,507	5.6	17,783	5.4	17,920	5.2
주민세	38,975	12.4	45,582	13.8	49,139	14.4
농업소득세	27	-	37	0.0	41	0.0
지역개발세	951	0.3	1,034	0.3	1,102	0.3
지방교육세	39,565	12.6	40,093	12.1	40,837	11.9
면허세	633	0.2	650	0.2	677	0.2
사업소세	4,731	1.5	5,248	1.6	5,672	1.7
과년도수입	5,848	1.9	5,320	1.6	5,925	1.7

자료: 2005 지방세정연감

이 아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거나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저자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세원 실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지역개발세는 석회석·철광석 등의 지하자원과 지하수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저자원(천연가스, 해양심층수) 또한

기존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지하수와 성격이 동일함에 착안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해저자원(천연가스, 고체메탄, 해양심층수)의 경우 개발 초기단계이며 자원의 매장량 또한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과징 방법 또한 용이하여 징세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원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해저자원 즉, 천연가스·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해양심층수에 대한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천연가스

(1) 개요

천연가스의 생성과정은 석탄과 유사하며, 석유가 생산될 때 함께 섞여서 생산되기도 하나 대부분 별도로 생산된다. 천연가스의 주요성분은 80~85%가 메탄(CH<sub>4</sub>)가스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공해물질의 함량이 지극히 적다는 이점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이용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가 생성될 때 포함된 수분과 질소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 후 -162℃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액화시킨 상태로 필요한 곳으로 수송한 후 다시 기화시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액화천연가스는 공해요인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로 최근 들어 차세대 미래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 생산현황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km 해상에 세워진 “동해-1 가스전”은 1998년 가스가 매장된 것을 발견하였고 개발을 거듭한 결과 2004년 11월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4년부터 대륙붕 탐사

를 시작하여 유전개발에 나선 이래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것이다. 동해-1 가스전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최초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산유국 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발당시 세계 산유국은 94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어 2005년 3월에는 국내 대륙붕 6-1 광구 동해-1 가스전 인근 남서쪽 5km 떨어진 ‘고래-8 광구’에 대한 시추작업 결과 가채매장량 400억세제곱피트(LNG 환산 80만t)에 달하는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된 천연가스 80만t은 2억8천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울산·경남지역 34만가구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4.4%에 해당한다.

최근 2006년 2월에는 22만t 가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할 수 있는 새 가스층인 ‘고래 14구조’가 발견되었다. 이는 1998년 6월 동해-1 가스전과 지난해 3월 고래 8구조에 이어 국내 대륙붕에서 발견된 세 번째 가스층이다. 새 가스층의 추정 매장량은 100억 세제곱피트다. 여기서 생산될 LNG 22만t은 국내 4일치 소비량에 해당하며 울산 시민이 114일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동해-1 가스전의 가채 매장량 2,300억

세계급피트와 비교하면 소규모지만 동해-1 가스전 및 고래 8구조와 함께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새 가스층 개발로 1억 달러 안팎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가스층은 동해-1 가스전 동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올해 1월 말 시추작업을 시작해 지하 1761~1834m 구간에서 약 43m 두께의 가스층을 발견한 것이다.<sup>1)</sup>

○ 동해-1 가스전

- 가스전 위치: 울산 앞바다 남동쪽 약 58km 지점
- 가채매장량: 2,500억 세제곱피트(LNG 환산 약 5백만t)
- 하루생산량: 50백만 세제곱피트(약1천 톤, 연간 40만t)
- 생산기간: 약15년(2004년~2018년)

○ 고래-8구조

- 가스전 위치 : 동해-1' 가스전 남서쪽 5km 지점
- 가채 매장량 : 400억 세제곱피트(LNG 환산 80만t)
- 우리나라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4.4%에 해당

- 현 국제 시세로 2억 8,00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상당

○ 고래-14구조

- 가스전 위치 : 동해-1' 가스전 남동쪽 11km 지점
- 가채 매장량 : 100억 세제곱피트(LNG 환산 22만t)
- 수입대체효과 : 약 1억 달러

나. 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화학적으로는 물 분자들내에 메탄분자가 끌려들어간 일종의 셔벳(Sherbet, 과즙(果汁)을 얼린 빙과(氷菓)같이 버석거리는 얼음상태)같은 결정체이고, 바꾸어 말한다면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포함된 천연가스의 95% 이상이 Methane으로 구성되어 있어 Methane Hydrate라고도 한다.

천연가스가 저온·고압 하에서 응고한 드라이 아이스형 고체물질로 석유 및 가스의 대체 연료로써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산업자원부의 보고자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약 10조 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해대륙붕(독도 연안)에 약6억 톤

1) 김기곤 기자, 「동해 세 번째 가스전 발견」, 울산 매일, 2006.2.21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국내가스 소비량이 2천만 톤임을 감안하면 국내가스 소비량의 30년분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양이다.

현재는 기술력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도 2015년에 생산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차세대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심층수

##### (1) 개요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이상의 깊은 곳에 위치한 물로 그린랜드에서 발원하여 2000년을 주기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순환하는 바닷물이다.

해양심층수는 저온성, 청정성, 안정성, 부영양성, 숙성성 등의 특징을 가진 유용한 해양자원이며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물질순환계 중에서 생성되어 해수로서 재생 및 순환되는 막대한 청정자원이다.

해양심층수가 가지는 유용한 특성을 이용한 활용분야는 술, 생수, 식품, 소금, 화장품 등 수산, 산업분야 및 의료분야에서 이미 40여종에 달하며,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특히 해양심층수에는 필수 미량원소나 각종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담수

화 등을 통한 미네랄워터의 생산 등 먹는 물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용한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보다 깊은 바닷속까지 취수관을 설치하고 펌프로 끌어올려 용도에 맞게 처리한다. 심층수는 보통 해안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관설치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활용의 유용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자원공사가 해양심층수를 21C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음용수로 시판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심층수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2) 개발현황

우리나라 동해에 양질의 심층수가 부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창출에 필요성을 느끼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고성군)가 주도로 참여하여 강원도 고성군 일대 81,900평 규모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심층수 개발사업 1단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 심층수 자원은 동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가능 지역으로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일부지역이 해당되나, 개발경제성을 좌우하는 취수거리와 배후부

< 주요 개발후보지간 취수거리 비교 >

구 분	강원도 고성	강원도 양양	강릉시 강동면	강릉시 연곡면	울릉도
취수거리	2,500m	8,000m	7,000m	8,000m	1,000m

지 확보가능성,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 고성군이 우선적지로 선정되었다.

(3) 활용분야

생수, 기능성 및 식용소금, 식용얼음, 두부 등 식품가공, 해수사우나, 양식업, 음료수, 화장품(화장수) 등 해양심층수의 이용 범위는 방대하다.

이미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심층수를 활용한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하여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오염 등으로 먹는 샘물의 수요는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심층수 산업이 본격적으로 정착화 되면 일정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어서 향후 기존의 생수시장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Ⅲ. 해저자원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과세대상 정의·납세의무자·납세지·과세표준·세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

1. 과세대상

가. 지하자원

(1) 사전적 의미

지하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땅속에 묻혀 있고 경제적으로 사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인간이 자연에서 채취하여 이용하는 것들은 모두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하나 해저로부터 얻게 되는 자원을 지하자원이라 한다, 여기에는 철광석, 석탄, 석유 등의 광물자원과 지열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이 있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2) 지방세법상 의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3호에 규정한 지하자원의 범위는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광물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균일한 물질(대부분은 무기질)로서 거의 일정한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는 고체이며, 대부분이 결정상태이고, 원자는 규칙적인 배열의 원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포함되는 광물로는 석회석, 고령토,

규석, 활석, 운모, 흑연, 금, 은, 철광석, 납석 등등이 있지만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주요한 세원으로 부과되고 있다.

### 나. 해저자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에서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중 석유 및 천연가스등을 “해저광물”이라 한다고 정의 하고 있어 해저광물 또한 지하자원의 광물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현 지방세법의 지하자원으로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지하자원과 함께 해저자원을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6호 신설을 통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포함), 해양심층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2.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개발·이용 또는 지역적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환원 차원에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 3. 납세지

천연가스시추 및 해양심층수 개발로 인

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양심층수의 경우 심층수 이용후 배출수 방류에 따른 어장환경이 염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취수관의 시설보호를 위해 어선운항에 제한을 가하는 등 지역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시추의 경우 해저에서 시추된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고 이송된 천연가스는 불순물 및 수분제거와 같은 재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육상시설은 공정별로 가스 및 컨덴세이트 분리시설, 수분제거시설, 가스가압시설, 가스저장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주민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해안 접경지역은 크고 작은 지진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가스시추로 인한 해저토사의 함몰 등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처럼 가스시추 및 관련시설 주변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가스시추 및 관련시설을 설치되는 지역을 납세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4. 과세표준 및 세율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로 천연가스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가스요금인상과 같은 국민부담을 주지 않고 가스시추로 인해 국가 및 개발수익자가 갖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줄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공공재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설투자비용 및 개발이익 등을 분석한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 IV. 세수 기대효과

#### 1. 천연가스

동해-1가스전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생산된 가스량은 40만 톤이며, 생산된 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전량 판매하여, 한국석유공사는 그 매각대금으로 약15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지역개발세 연간 세수를 전망해보면 예상세율(생산된 천연가스금액의 1000분의5)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지역개발세로 7억5천

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동해-1, 고래-8구조, 고래-14구조의 총매장량이 약 600만 톤임을 감안하면 이를 전체 생산할 경우 천연가스금액이 약 2조 2천5백억원에 상당하며, 추정되는 지역개발세액이 112억 5천만원 정도 예상된다.

#### 2. 가스(메탄)하이드레이트

독도와 경상북도 구룡포를 잇는 동해의 넓은 해저에는 천연가스층인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달러(150조원)에 달한다. 이를 지역개발세 예상세율(생산된 천연가스금액의 1000분의5)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역개발세로 총 7천5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 3.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와 관련한 연구 개발이 초기단계이므로 채수량이나 시장규모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수가 있으나, 심층수의 개발이나 산업화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현재 일본의 심층수관련 시장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sup>2)</sup>.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2) 김영진·장상진 기자, 「땅값 2억7827만원... 자원·

로 보여 진다.

현재 지하수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는 연간 전국세액이 75억원 정도이며, 해양 심층수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고 매장량이 무궁무진하여 지방세의 신세원으로써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지역개발세의 현 실태와 지역개발세원의 실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세목의 신설 없이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으로 법령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저자원이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이 되면 총 7,6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수증대방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사용과 직접 연계되어 반대급부 없이 얻는 수익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원인자부담원칙”의 차원에서 사회적 환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여 사회·산업환경이 다변화 혹은 다양화 되었고, 변화된 사회상을 과거의 제도(조세체계)로는 즉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저자원(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방세법령이 정비되어 지방재정환경을 건설할 수 있는 지방세의 주요세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해저자원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풍력 및 태양열로 생산하는 판매용전력”, “조력발전”, “골재채광”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과 “고압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방안 또한 강구되었으면 한다. ☺



어장 '무한 가치', 조선일보, 2005.3.18